

2025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공고

2025년도 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추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근로추천 희망자(결혼이민자) 및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어가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군 산 시 장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신청(결혼이민자)

- 신청기간 : 2025년 3월(공고 개시일) ~ 4월 30일
- 모집업종 : 김양식업(해면양식)
- 모집대상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한 피추천자(본국 가족)

- ①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이내 친척
 -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 ② 만 25세 이상 ~ 50세 미만(사증발급신청서 신청일 기준)의 남성
- ③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결핵, 매독, 전염병, 마약 복용자 제외), 범죄이력자 제외
- ④ 해상작업에 따라 멀미 문제 등으로 여촌경력이 필요하며 환경적응에 뛰어난 자

※ 어촌 경력자 우선 선정 예정이며 미선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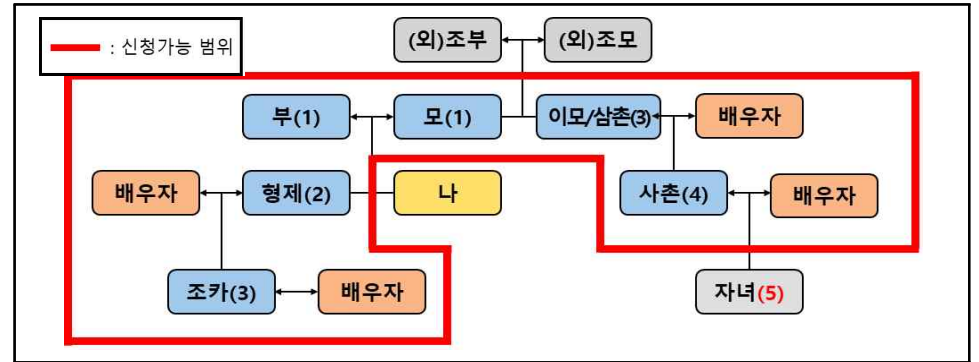
[우대 대상]

- ① 전년도 근로자 중 고용주의 재추천을 받은 자(제한요건 상관없음)
- ② 전년도 참여 근로자 중 성실 근로자
- ③ 본국에서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
 - ※ 입증서류 제출 - 어업 종사 경력증명(1년이상), 어업 기술자격증 또는 학위증
자국정부로부터 어업관련 보조금 수령 관련 증빙서류 등

[제외 대상] : 신청결과에 따라 인원 조정 시 반영예정

- ① 무단이탈 근로자의 가족인 결혼이민자가 추천하는 신규 피추천자⇒사업 신청 자격 박탈
- ② 전년도 근로자 중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포기자(조기출국자 등)
- ③ 이전 계절근로자 참여 근로자 중 비성실 근로자
- ④ 전년도 추천자 중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전 참여 중도 포기자

○ 신청범위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 4촌의 배우자까지)



○ 제출서류

- ①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붙임1) 양식 참고] * 전년도 근로자는 기존 고용주와 재계약 가능
- ② 결혼이민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 ③ 결혼이민자 책임서약서 [(붙임2) 양식 참고]
- ④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1부
- ⑤ (국내용)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귀화자의 경우)
- ⑥ (국내용) 기본증명서 1부 (혼인귀화자의 경우)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⑧ 그 외 보완증명을 위해 군산시(혹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신청방법 : 추천자의 방문신청만 가능

- 수산업 분야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진행 절차, 근로수칙 및 유의사항 등 사전고지

접수처	군산시청 7층 수산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 063-454-2893, 063-454-3035

고용 신청(고용주)

○ 신청기간 : 2025년 3월(공고 개시일) ~ 4월 30일

○ 모집대상 및 업종

- 김 양식업 운영 어가,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① 수산물 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②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 명의의 공동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가지고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모집 업종(법무부 허용업종)

허용 수산물		적용 업종
①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 김 건조, ㉡ 기타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해조류 ㉣ 해조류종자
②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참조기 그물 털기·선별 포장
		㉨ 명태 가공 ㉩ 굴 선별·세척·까기·포장(가공) ㉪ 전복종자생산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가리비 종패투입·망고체·채취포장(시범)

※ 어선원(E-9, E-10)이 어선에 승선하는 연근해어업은 계절근로 허용업종에서 제외

[제외 대상] : 사업신청 시 해당 사유에 따라 선정 배제될 수 있음

가. 공통사항

• 법무부 숙소 필수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나. 전년도 고용어가

-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위반 어가(임금체불, 최저임금, 인권침해 등)
- 고용주 귀책 사유로 최소 근로기간(채류기간의 75% 이상) 미보장한 어가

○ 제재사항

-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한 어가 시정 조치, 미이행 시 향후 근로자 배정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의 고용해지 및 방출 시 해당 계절근로자의 입국절차에 소요된 비용(입·출국 항공료, 번역료, 마약검사료, 여행자보험료 등) 배상
- 불가피한 사유시(사업장 폐업 등) 대체 고용주 연계노력 및 임금 보상(1개월) 必

○ 배정요건

- 사업 운영 규모(양식장 행사계약 면적, 업종별 '24년도 생산량 등)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단위 : 속, 톤, 박스)				
	생산 규모	30만속 미만	30~50만속 미만	50~60만속 미만	60~70만속미만
①㉠ 해조류(마른김)	30만속 미만	30~50만속 미만	50~60만속 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①㉡ 해조류(기타)	5천톤 미만	5~8천톤 미만	8천~1만톤 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①㉢㉣ 해조류(양식)	5명 이하				
②㉦ 어패류(멸치 건조)	8만박스 미만	8~12만박스 미만	12~16만박스 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②㉧㉨ 어패류(기타)	12톤 미만	12~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②㉩ 어패류(전복종자)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
②㉪ 어패류(양식)	(시범운영) 고성군(5ha 미만 양식장) 어가별 2명 이하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단체의 생산 수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배정 인원수 결정

※ 복수의 수산물 양식·가공 시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수산물의 허용 인원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으로 영세 어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 제출서류

-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붙임3) 양식 참고]
- ② 이행 서약서 [(붙임4) 양식 참고]
- ③ 어업경영체등록증 1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 어업경영체등록증 상 경영주만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가능
- ④ 업종별 증빙서류
 - 양식업의 경우 : 어촌계별 양식행사계약서(운영 면허지 일괄)
 - 수산물가공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공동어업권,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 ⑤ 전년도 계절근로자 재고용 희망 시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제출[(붙임5) 양식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

- 수산업 분야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진행 절차, 고용수칙 및 유의사항 등 사전고지

접수처	군산시청 7층 수산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 063-454-2893, 063-454-3035

3

사업절차

< 진행절차 >

계절근로자 추천 신청
(결혼이민자, 고용주 → 군산시)
3~4월 중



계절근로자
유치신청 및 배정
(군산시 ↔ 법무부)
5월 중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서류제출
(결혼이민자 → 군산시)
5~6월 중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법무부 → 군산시 →
결혼이민자)
6월 중



비자 발급
(계절근로자 → 현지대사관)
6~7월 중



한국 입국 및 사전교육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 군산시 ↔ 고용주)
'25년 하반기 중



근로
(계절근로자 ↔ 고용주)
입국일로부터 5개월

< 주요내용 >

- 근로 요건을 충족한 본국 가족 추천 신청(고용주 동시 신청)
· 제출서류 : 추천서,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유치신청 및 배정 확정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에 따른 지자체별 최종 배정 확정

- 본국 가족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사증(VISA)발급신청서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여권사본, 현지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류(원본·번역본)

- 사증(VISA)발급신청서 심사 완료에 따른 발급
· 현지 가족에게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신청번호) 전달

- 계절근로자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비자신청 및 발급
·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인신매매피해식별지표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한국대사관 지정병원), 범죄경력증명서

- 비자발급에 따른 입국일정 수립 후 한국 입국(개별이동)
· 체류 예정기간 여행자보험(현지 보험사) 가입
· 입국 후 마약검사 실시(동군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준비물 : 여권, 사진 1매, 검사비 별도]
- 담당공무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대면교육 실시(결혼이민자 동행)

- 근무지 이동 후 근로 시작(체류기간 준수)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준비물 : 사진 1매, 여행자보험 증서, 마약검사결과지(밀봉)]

4

근로내용

○ 근로기간 : **기본 5개월** [인력수요 시기 : 2025년 7월 ~ 2026년 5월 중]

- 해당 기간은 김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운영시기로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에 따라 개인별 입국
- 당해연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최초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5개월 이내**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근로계약 연장 시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사증(VISA)		분야	피초청자 등	체류기간	사증유효기간/종류
계절근로	E-8-4	어업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5개월	3개월/단수

- ※ 체류기간 90일 초과 시 외국인등록 대상(연간 사증발급신청서 및 사증발급횟수 제한없음)
- ※ 연장 불가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로 고용해지 시
- 기본 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주가 체류기간 연장을 비희망하고 타 고용희망 사업장 부재 시

○ 근로장소 : 군산시 고군산군도 일원 김양식업장 일대

- 근무처 배정 및 근로계약 체결한 어가에 따라 다름

○ 근로임금 :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지급 (일괄 도급식 근로계약)

- 김양식업 : 월 2,515,530원 이상 [2025년도 최저임금 2,096,270원 + 해조류양식업가산금 20%]
- 수산물가공업 : 월 2,096,270원 이상 [2025년도 최저임금]

○ 숙식제공 : 고용주 제공(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공제 가능) * 김양식업 : 최대 10% 공제

- 고용주 자택 및 별도 마련 숙소에서 숙식(필수시설, 용품 등 구비)
- 해당 숙소는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숙소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음
- 숙식비 공제 시 상호 합의하에 숙식비 공제 동의서 작성 必

○ 근로수칙 : 근로기준법에 따르나 해면양식(해상작업) 특성상 근무일정이 유동적임

- 근로시간 : 작업환경(기상요건 등) 및 사업장 작업계획에 따라 유동적
- 휴 일 : 김양식업 특성상 기상요건에 따라 작업 여부가 좌우되므로 기상악화로 작업 불가 시 휴일 대체 가능
- 수 당 :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 시 지급
- 보 험 : 산재보험 혹은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고용주) * 미가입 시 근로 중 상해치료는 고용주 전액부담
여행자보험 의무가입 (계절근로자) * 외국인등록 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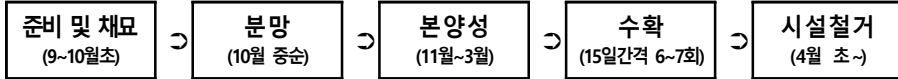
- ※ 유의사항 : 근로자 귀책사유나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고용계약해지 시 비자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즉시 출국해야함

5

기타사항

○ 김양식업 안내

- 양식시기 : 매년 9월 ~ 이듬해 4월 (약 8개월) *고용주 사업운영 기간에 따라 증감 가능



- 업무내용 : 해조류 양성 및 채취를 위한 업무전반 (육상·해상 근로)
- 안내사항
 - ▶ 해상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멀미, 부상 등)로 어업 경력이 있거나 환경적응에 뛰어난 자를 판단하여 우선추천 바람
 - ▶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음을 반드시 인지
 - ▶ 근로자 귀책사유나 멀미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개선(적응) 불가 시 고용 보장 어려움
- 근로전경(예시)



○ 사전교육 (입국 후 근로 전 실시)

- 고용주, 계절근로자 필수 준수사항
- 인권침해 예방 교육
- 해상작업 안전 교육
- 위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안내
- 임금 및 숙식비 공제 관련 내용 (근로계약 내용)
- 외국인등록 절차 안내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의사소통

- 간단한 의사소통에 대한 계절근로자의 입국 전 사전학습 필요
- 사전교육 시 결혼이민자 동행 및 통역
- 노사문제 등의 발생에 따라 상호소통 필요 시 통역 인력 동원(군산시 가족센터 지원)

○ 노사문제

-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 갈등 발생 → 결혼이민자 경유 해결 어려울 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양측 상황파악 후 제재 조치)
- 고용주 불찰 시 시정요청 (시정불가 시 다른 사업장 배정)
- 계절근로자 불찰 시 결혼이민자 경유 시정요청

○ 이탈문제

- 이탈 시 결혼이민자 경유 즉시복귀 조치(미복귀 시 불법체류 간주)
- 체류기간 기본 5개월 준수 (기한 내 미출국 시 불법체류)
- 결혼이민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책임 이행 서약서 작성 의무
- 미복귀 시 해당 근로자의 추천자(결혼이민자)는 향후 신청 자격박탈
- ※ 무단이탈(불법체류) 시 「출입국 관리법」 제94조에 의거 범칙금 부과됨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 근로기간 중 문제 발생 시 결혼이민자(경유) → 담당 공무원 신고 (비상연락망은 사전교육 시 교육자료와 함께 전달 예정)
- 관계기관 협조요청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경찰서 등)

이 외에 문의하실 사항은 군산시 수산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454-2893, 063-454-3035

【붙임1】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外籍季节性工人应聘申请书)

□ 신청자(APPLICANT, 申请人)

성명 Name 姓名	국적 Nationality 国籍	성별 Gender 性别	[]남(男) []여(女)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직업 Occupation 职业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本国地址	연락처 Phone No. 联系方式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 (DETAILS OF SEASONAL WORK, 欲工作地区和欲工作时间)

희망 근로지역 (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	군산시 일원
희망 근로기간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2025. 하반기중 (향후 근로계약 및 근무일정에 따름)
근로희망 여가 (전년도 근로자와 고용주가 사전협의된 경우)	고용주 성명 : / 사업장 :

□ 추천자(DETAILS OF RECOMMENDER, 推荐人)

성명 Name In Full 姓名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연락처 Phone No. 联系方式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 to applicant 与申请人关系

본인은 2025년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2025.

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 2025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申请日期	신청자 Applicant 申请人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签或章

【붙임2】

- 책임 이행 서약서 -

본인은 「2025년 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근로자의 가족이자 피추천자로서 추천자(근로자)의 입국 사전 이행 절차에 협조하고 성실한 근무 수행을 위해 아래 규정을 책임 이행하며, 규정 위반 및 근로자의 무단이탈 발생 시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향후 군산시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추천 자격 또한 박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근로자의 애로사항 발생 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전달과 통·번역이 필요할 경우 협조합니다.
 - 근로 환경상 근무지를 상시 방문하거나 근로자를 면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근무 중에는 방문을 피하고 근로 종료 후 또는 휴일에 면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로자와 군산시 외의 지역 외출 시에 사전에 고용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군산시 수산산업과에 전·후 통보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 중 무단이탈할 경우 복귀 독려 등 해결을 위해 근로자 연락처 및 통역 역할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미복귀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며 본국으로 출국명령을 받게됨
 - 체류기간(근로자격) 만료 시 즉시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 미출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됨
- ※ 무단이탈(불법체류) 시 「출입국 관리법」 제94조에 의거 범칙금 부과됨

2025년 월 일

결혼이민자 주소 : 군산시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3】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신청서[고용주용]

신청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성별	[] 남 [] 여
	사업장 주소	군산시		연락처		
	사업영역 등록번호			외국인 고용현황 (인원/국적)	인원 :	국적 :
운영 현 황	운영업종	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적 (생산규모) ()		
	인력 필요시기	2025년 월 ~ 2026년 월	신청인원 / 국적	E-8 (5개월) : 명 / 국적 :		

검토사항(해당사항 확인)

- 계절근로자 숙소유형 고용주 거주지 , 별도숙소
- 별도숙소 마련 시 숙소주소 :
-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환경이어야 함.
- 냉난방 설비, 온수 샤워시설 여부 여 , 부
- 숙소 내부 잠금장치 설비여부 여 , 부
- 취사도구 및 침구류 구비여부 여 , 부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비여부 여 , 부

위와 같이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인(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공공기관 등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고용주 신분증, 사업영역등록증, 생산 규모 증빙서류 등

【붙임4】

이행 서약서

본인은 2025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고용어가로 신청하며, 고용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위반 시에는 계절근로자의 근무지 체재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향후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시 근로자 배정 축소나 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고용주 준수사항 -

- 근로자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해조류양식업의 경우, 월 통상임금내 10% 초과 징수금지
- 계절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혹은 어선원보험에 의무가입
- 임금기준 및 근로기준을 준수한다,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해조류 양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20% 가산)
-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
(임금날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평일에 지급)
- 연장근무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조건 명시)
- 고용대상 업종 외 다른 작업장에서의 근로 금지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휴일보장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주40시간 근로 원칙, 점심시간 1시간 부여, 월 2일 이상 휴가 보장)
- 고용주가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등)을 보관 금지
- 인권침해(신체적폭력, 언어적폭력, 폭행, 성희롱, 성폭력, 인종차별) 금지
- 이 외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기재된 사항

2025. .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